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1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4. 2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2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아동가족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검토기간: 2024. 2. 5.(월)~2024. 2. 8.(목)

## 2. 제안이유

-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정원(안)	운영방식	세대수
달서SK VIEW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	본리동 433번지	361.1158m <sup>2</sup> (지상1)	50 (예정)	민간위탁	1,196
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	상인동 1332-100번지	318.19m <sup>2</sup> (지상1)	50 (예정)	민간위탁	990

#### 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내용
  - 어린이집 운영(아동 입소·상담 등 보육, 인사·회계 등)
  -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
- 위탁기간 : 5년(준공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)
- 수탁자 선정방식: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

### 4. 관련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조례」 제15조(위탁운영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서 제7조까지

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민간위탁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,
- 본리동 433번지 달서SK VIEW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상인동 1332-100번지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각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이 제출되었고, 달서구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
-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,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충분하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절차 및 위탁기간 등을 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영유아보육법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② <생략>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<생략>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

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의2(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.

【별표 8의2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

### 1. 일반기준

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

제15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, 재위탁(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)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.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